

충청북도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모집 재공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및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0. 10. 7.

충청북도지사

1. 공모개요

- 공모대상 : 충청북도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 사업목적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신규·기존 아이돌보미 교육
- 선정기관 : 1개소(북부권 : 충주, 제천, 단양)
- 지정기간 : 지정일 ~ 2022. 1. 31.
-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비
 - 교육대상 : 아이돌보미 활동희망자 중 서비스제공기관 면접 통과자
 - 교육시간 : 양성교육 80시간 / 보수교육 16시간
 - 교육비(부담주체)
 - 양성교육 : 1인당 30만원 이내로 책정(80시간, 30인 이내 운영)
 - 보수교육 : 1인당 18만원 이내로 책정(16시간, 50인 이내 운영)
 -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에서 교육비 지원
- 주요역할
 -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시행
 - 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연초 연간 교육계획 수립, 교육훈련생 모집·홍보 및 교육 시행
 - 서비스제공기관 등에서 교육훈련 추가 수요가 많음을 이유로 추가 교육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과정 종료 후 이수자 대상 교육평가 설문 실시 등

2. 신청자격

- 직업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
 - ※ 여성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보육교사 양성 등 유관교육기관 우선 지정 가능
 - * 2020년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현황 참고(붙임 2)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0. 13.(화) ~ 10. 15.(목) 【3일간】**
 -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20. 10. 1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가족지원팀)
 - 주소 :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서관 4층)
 - 전화 : 043) 220-3943

4. 신청서류

- 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1]
- ② 교육계획서 1부[서식 2]
- ③ 단체소개서 1부[서식 3]
- ④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교육기관 지정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 ⑤ 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등 사본(해당기관)
- ⑥ 교육기관 지정기준[별첨] 증빙서류 1부
- ⑦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 각 1부(해당기관)
- ⑧ 제출 자료는 A4용지로 작성하여 책자로 제작 후 8부 제출
 - ※ 구비서류 중 지정된 소정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 에서 다운받아 작성

5.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 제출서류 심사결과 산술 평균값이 높은 기관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교육운영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교육제공 능력 (20)	최근 3년간 교육서비스 제공	10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내용 및 종류 평가
	최근 3년간 교육 제공 실적	5	최근 3년간 제공된 교육서비스의 내용 등
	재정의 건전성	5	재정의 규모, 운용실태 등 평가
교육운영 능력 (40)	교육 커리큘럼, 교육 강사진 구성 등	15	신청기관에서 마련하거나 발행한 커리큘럼 평가
	인력배치 기준	10	시행규칙 제4조의 교육강사진 구성의 적정성 (별첨2 참조)
	시설기준	10	시행규칙 제4조 시설기준 적정성(별첨2 참조)
	운영 인력 현황 평가	5	돌보미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직원 현황 등
재정운영 방안 (20)	예산 운영 계획	20	교육비 산정의 타당성 및 예산 운영 계획 등
기타사항 (20)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여부 등	20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 지정 여부, 지리적 접근성 등
합 계		100	

6. 결과발표 : 2020. 10. 19.(월) 예정 ※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평가된 자료는 비공개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음
- 단독 응모일 경우 적격(70점 이상)여부 판단하여 심사

붙임 1. 교육기관 지정기준 1부.

2. 별지서식(1~3) 각 1부.

3. 2020년 공공기관 현황 1부. 끝.

【별첨】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기준(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1. 시설기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교육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가. 강의실 1)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이론, 실기 등)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실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거나 사용할 수 있을 것 나. 사무실 1)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의 관리 및 교육생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통신설비, 집기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비품을 갖출 것 다. 그 밖의 시설 1) 채광, 환기, 조명, 냉난방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출 것 2)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할 것
지원시설	세미나실·자료실·휴게실·양호실과 그 밖에 교육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2. 인력 배치기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분	자격기준
전임교수 또는 외래교수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보육, 사회복지, 아동복지 및 유아교육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보육·교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서비스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아이돌보미 교육에 적합하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